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2
0
2
4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2024년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2024년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남·북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조사기록 단체입니다. 아직 억압적 체제로부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무력분쟁 또는 독재로부터 전환된 사회 모두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현장 접근이 제한된 곳의 인권침해를 조사기록하고 지도로 상황을 시각화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자와 기여자

강정현

박송아

신희석

이승주

이영환

조성휘

Suhena Mehra

박수곤

표지 그림

Ariana Husseini

권장하는 인용방법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서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24).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Existing “Nowhere”:
Looking into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Seoul: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2024)

발행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 www.tjwg.org (한국어) / en.tjwg.org (영어)

이메일 info@tjwg.org

전화 02-722-1162

팩스 02-722-1163

ISBN 979-11-976954-9-0

조사와 기록화 작업에 기여해주신 분들

김혜숙 | 북한 제18호 관리소 수감경험자

김형수 | 징검다리 공동대표

정광일 | 노체인 대표

전혜빈 | 휴리독스(HURIDOCS) 아시아태평양 담당관

Benedict Salazar Olgado | 휴리독스 기록전문가

보고서 디자인

조의환

오숙이

그래픽 디자인

양희준

장은지

차례

머리말 8

조사방법 11

파악한 강제실종 사건과 실종자 현황의 특징 14

강제실종의 정의와 계속적 성격 19

법적 정의: 자유 박탈, 국가 관여, 공개 거부 19

계속성: 생사·소재 규명까지 끝나지 않는 범죄 20

방지책: 적법절차, 구금장소 통보, 면회 21

북한의 강제실종: 자유 박탈, 국가 관여, 공개 거부 23

북한 내 강제실종 23

체포, 구금, 납치 23

국가보위성과 그 밖의 국가기관들의 관여 25

통보 부재와 정보제공 거부 32

탈북 난민의 초국가적 강제실종: 중국, 러시아 등 외국 국가기관의 방조 40

중국 40

러시아 42

한국 44

북한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유 46

탈북 47

탈북 시도 53

탈북 준비 53

탈북 도움 55

연좌제 56

한국 등 외부세계와의 연락·접촉 58

김씨 일가나 체제에 대한 비판 60

종교행위 61

한국·외국 문화의 이용 62

기타 63

맺음말 64

표·지도·차트·사례

- 표**
1. 심층면담에 참여한 탈북민 62명의 구성 13
 2. 113명의 강제실종 연도 (체포·연행 시점 기준) 16
 3. 강제실종자의 연령대 17

- 지도**
1. 체포·연행 지역 15

- 차트**
1. 강제실종자의 성별 구성비 17
 2.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기관 18
 3. 강제실종 구성 요소 20
 4. 체포·연행 기관 26
 5. 체포·연행·복송 후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 31
 6. 북한 국가보위성에 의해 강제실종에 이르는 과정 34
 7. 북한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유 47
 8. 중국의 강제송환과 북한 내 이감 과정의 강제실종 49

- 사례**
1. 중국의 복송 후 강제실종된 A씨의 이감 경로 50
 2. 중국에서의 종교활동 혐의를 받은 B씨의 복송 후 강제실종 과정 52
 3. 탈북을 준비하던 C씨의 강제실종 과정 54
 4. D씨 일가의 강제실종 가계도 58

전체주의 체제들은 사회 전체에 절대적 복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강제실종을 일삼아 왔다. 세계의 독재자들은 강제실종으로 정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실종자의 생사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주고, 이들도 강제실종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해 침묵시켜 왔다. 강제실종은 자체로도 중대한 인권침해이지만 생명권,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수반되는 여러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점령지에서는 히틀러의 악명 높은 ‘밤과 안개(Nacht und Nebel)’ 명령에 따라 저항세력이 한밤중에 독일로 끌려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소련 스탈린의 대숙청 중에도 수백 만 명이 비밀경찰인 내무인민위원회(NKVD)에 의해 몰래 잡혀가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굴라크 수용소로 보내졌다. 1970년대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군사정권 하에서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조직적, 일상적으로 납치·살해된 것은 유엔이 ‘강제실종’을 독자적 인권침해로 다루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오늘날 국제 공동체는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국제법상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다. 이는 강제실종을 조사하고, 강제실종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s of non-repetition)을 포함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충분한 배상(prompt, fair and adequate reparation)을 제공할 의무를 수반한다.¹

¹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10년 12월 23일 국제 발효, 2023년 2월 3일 한국 내 발효, [다자조약, 외교부 제2539호, 2023. 2. 1],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6399>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공개처형과 강제실종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당국의 폭력은 당국 주도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강제실종은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²

이러한 COI 보고서로부터 영감을 받아 2014년 창설된 전환기정의위킹그룹(TJWG)은 먼저 북한의 공개처형,³ 뒤이어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북한처럼 현지 접근과 현장증거 수집이 극히 제한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인권범죄와 침해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기준과 모범에 부합하도록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또한 수집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하고 보존하여 정의와 책임규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범죄가 벌어지는 과

² 통일연구원(번역),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para. 1214,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2330>

³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서울: 전환기정의위킹그룹, 2017);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서울: 전환기정의위킹그룹, 2019); 전환기정의위킹그룹,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서울: 전환기정의위킹그룹, 2021) <https://en.tjwg.org/mapping-project-north-korea/>

정과 패턴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기존까지 북한정권의 강제실종범죄는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사건 위주로 조명됐고,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저질러온 강제실종범죄는 덜 조명된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내 강제실종 사건의 상당수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국제사회는 탈북했거나 제3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각국 국가기관이 체포해 강제송환하거나 각국 영토에서 북한 기관원들이 벌이는 납치 활동을 묵인·방조하는 데서 비롯되는 강제실종을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로 규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현직 수반인 김정은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표적제재 시, 강제실종범죄 책임도 중요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체포·연행 단계와 강제실종 단계의 관할기관이 지목된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는 두 권의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배포한다. 이 보고서의 성격은 '실태보고서'이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수 년 간 진행한 조사기록 결과를 종합해 북한의 강제실종범죄 실태를 조명하고 우리가 주목한 문제점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발간하는 다른 보고서의 성격은 '에드보커시 보고서'이다. 북한의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그동안 전환기정의위킹그룹과 파트너들이 해온 기존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조사방법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7년부터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범죄(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s)를 밝히려는 조사와 기록화 작업을 시작했다. 첫 단계로 피해가족과 지원단체들과 협력하며 1950년대 이후 북한에 납치·억류된 한국인 사례를 망라하는 온라인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저마다 수십 년간 수집하고 보관해왔지만 흩어져 있었거나 서로 다른 형태로 유지되던 기록을 통합, 표준화, 전산화하여 피해가족들뿐만 아니라 연구자, 언론인, 정치인, 각국 정부 관리들과 외교관, 시민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2021년 1월, 전사·전후 납북 피해자와 관련 정보를 등록해 처음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풋프린츠(FOOTPRINTS) 1.0버전은 ‘카드’ 형태로 각 피해자와 알려진 가해자, 국내 법원에서 다뤄진 사건과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공개적으로 진정된 사건들을 담았다.⁴ 각 ‘카드’는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관련문서와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로 연결되거나 첨부파일을 제시하고 있다. 약 2만 명의 납북 피해자를 등재했던 데이터베이스는 이후 4년간 확장되고 기능이 고도화되어 2024년 6월에 이르러 약 9만 명 규모의 2.0버전으로 진화했다.⁵

4 "FOOTPRINTS: Documenting Those Taken by North Korea Online," posted March 30, 2021, Youtube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d9kuK0c1L0Q>; Edward White and Kang Buseong, "The digital detectives searching for North Korea's disappeared," *Financial Times*, May 15, 2021, <https://www.ft.com/content/c93451fb-676b-4b32-bcba-071b26046264>

5 "FOOTPRINTS: 북한에 의한 실종피해자 데이터베이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https://nkfootprints.tjwg.org/ko/>; "Footprints 2.0 database (North Korea)," 휴리독스, <https://huridocs.org/resource-library/human-rights-research-databases/north-korea-footprints/>

두 번째 단계로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2021년부터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실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규모가 가장 크지만 가장 조사가 덜 된 피해집단인 북한 주민들의 강제실종 사례를 기록하고 분석할 필요성에 주목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북한에서는 보위원, 안전원, 그 밖의 국가기관원들이 예고 없이 집이나 직장에 들이닥쳐 사람을 잡아가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강제북송되는 탈북민들도 현지 당국의 체포 시점부터 북한으로의 이송, 북한에서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외부와 단절되고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국제법상 ‘강제실종’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상세한 조사나 국제적 보고도 드문 상황이었다.

이에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명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심층면담했다. 2023년 4월부터는 최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 등의 국가기관에 체포 또는 연행된 후 실종된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들에 관해 진술하고, 각자 인지하고 있는 가해기관 또는 인물을 설명했다. 모든 면담은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심층면담한 탈북민 62명의 성별, 연령대, 북한에서의 주 거주지역, 최종 탈북연도는 <표1>과 같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2023년 수정보충된 북한 형법과 2021년 수정보충된 북한 형사소송법을 인용했다.

표 1 심층면담에 참여한 탈북민 62명의 구성

단위: 명

성별		북한에서의 주 거주지역	
여	41	함경북도	16
남	20	함경남도	2
진술 철회	1	양강도	28
		자강도	0
		평안북도	3
		평안남도	5
		강원도	1
		황해북도	2
		황해남도	3
		평양	1
		진술 철회	1

연령대	
20대	1
30대	4
40대	14
50대	23
60대	11
70대	6
80대	2
진술 철회	1

최종 탈북연도			
김정은 시기 (2012~현재)		김정일 시기 (1994~2011)	
2023	3	2011	2
2021	1	2010	4
2020	2	2009	3
2019	6	2008	4
2018	5	2005	1
2017	1	2004	2
2016	1	2003	1
2015	3	2002	1
2014	2	2001	1
2013	8	2000	1
2012	4	1999	1
소계	36	1998	1
		1997	2
		1996	1
진술 철회	1	소계	25

파악한 강제실종 사건과 실종자 현황의 특징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명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심층면담했다. 이를 통해 66건의 강제실종 사건과 113명의 실종 과정을 파악했다. 각 사건이 강제실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법적 정의에 따라 분석했다.

진술인과의 관계로 보면, 강제실종된 사람이 진술인의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는 113명 중 54명(47.8%), 지인은 59명(52.2%)이다. 27명은 진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였고, 27명은 진술인의 조카, 형부, 시동생 등 친척이었으며, 이외의 59명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이었다.

체포·연행된 위치로 보면, <지도1>처럼 113명 중 90명(79.6%)이 북한 내에서, 23명(20.4%)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체포되면서 실종이 시작됐다. 북한 내에서 체포되거나 연행된 경우의 상위 5개 지역은 양강도 42명, 함경북도 23명, 평안북도 9명, 평안남도 8명, 함경남도 4명이었다. 해외에서 체포된 후 실종된 23명 중 19명은 중국에서, 3명은 러시아에서, 1명은 베트남에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국에서 체포됐던 19명 중 3명은 실종 상태가 해소됐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이 행방을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알 수 없게 되면서 실종 상태에 빠졌다가 1년여 후 한국 입국에 성공했다.

이 조사의 초점 중 하나는 실종 상태에 이르는 단계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한동안 실종됐던 사례로 포함됐다. 이외의 110명은 행방과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지도 1 체포·연행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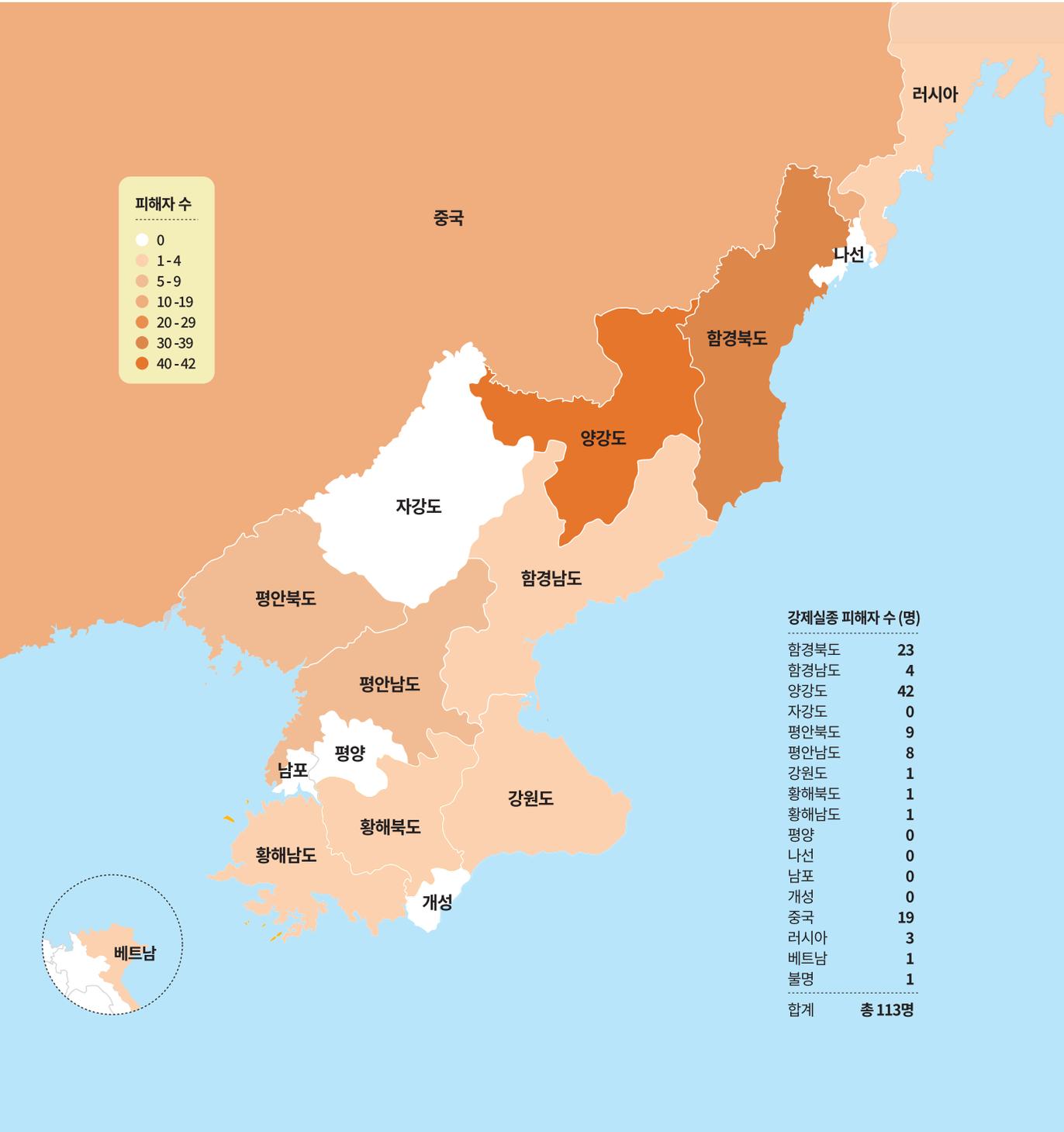


표 2 113명 강제실종 연도 (체포·연행 시점 기준)

체포 연도		피해자 수 (명)	체포 연도		피해자 수 (명)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	6	김정일 정권	2007년	5
	2020년	1		2006년	1
	2018년	4		2005년	9
	2017년	1		2001년	1
	2016-2017년	1		2000년	3
	2016년	6		1998년	1
	2015년	8		1997-1998년	2
	2014년	5		1997년	5
	2013년	1		1996년	5
	2012년	2		1995년	1
		35		68	
김정일 정권	2011년	14	김일성 정권	1993-1994년	2
	2010-2011년	3		1990년	1
	2010년	6		1980년	1
	2009년	2		1979-1980년	3
	2008-2009년	1			7
	2008년	9	불명		3

〈표2〉가 보여주듯이 113명 중 35명(31.0%)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강제실종됐다. 이 조사만으로는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범죄가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김정은 정권이 강제실종범죄를 계속 벌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이 66명(58.4%), 여성이 47명(41.6%)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페루, 남아프리카에서는 강제실종자 현황은 남성 70~94%, 여성 6~30%로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⁶ 북한에 관해서는 큰 규모의 현황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여성의 비율은 특이점이다. 만약 북한에는 여성 강제실종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다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다.

⁶ 이러한 경향성은 각국에서 강제실종문제 규명 작업을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것인데 이에 대해 뉴욕에 소재한 국제전환기정의센터(ICTJ)는 여성의 강제실종 사례가 실제보다 덜 신고되거나 적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Polly Dewhirst and Amrita Kapur, *The Disappeared and Invisible: Revealing the Enduring Impact of Enforced Disappearance on Women* (New York: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2015), <https://www.ictj.org/sites/default/files/ICTJ-Global-Gender-Disappearances-2015.pdf>

차트 1 강제실종자의 성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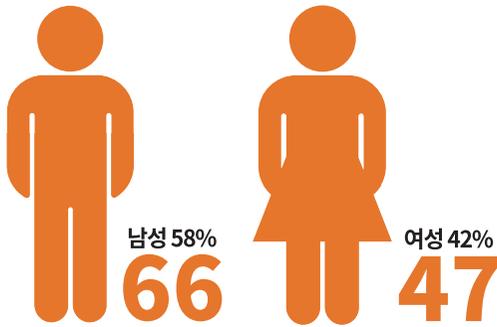


표 3 강제실종자의 연령대

연령	피해자 수 (명)
10대 미만	13
10대	4
20대	22
30대	22
40대	15
50대	10
60대	4
70대	2
불명	21

첫째,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체포·송환되어 강제실종된 여성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에서 체포된 후 강제실종된 경우를 보면 남성은 18.2%(66명 중 12명), 여성은 23.4%(47명 중 11명)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된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강제실종이 시작된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의 반인도범죄 규모가 큰 원인 중 하나인 연좌제 때문일 수 있다 여성이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버지나 남편과 정치범수용소에 동반 수감되면서 실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인 반체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실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비정치적인 행위나 경미한 불평 발언으로도 반국가범죄 등 정치범으로 강제실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강제실종자의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이 38.9%(113명 중 4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0~9세)으로 강제실종된 아동은 11.5%(113명 중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진술인들은 13명의 아동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된 유력한 이유를 탈북 시도(4명), 탈북 준비(3명), 연좌제 처벌(5명)로 꼽았고, 1명은 이유가 불명확했다. 부모와의 동반 탈북 시도나 부모와 함께 연좌 처벌되어 강제실종되는 아동들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질의, 명시적 비판, 강력한 행동이 특히 필요하다.

차트 2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기관

113명의 피해자 중 62명이 국가보위성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체포 주체는 중국 공안(17명)과 북한 국경경비대(9명)이지만,
체포 이후 대부분이 보위부로 이송되어 국가보위성 관할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진술인들은 강제실종된 사람들을 처음 체포·연행한 기관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중국 공안부,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군 보위국을 빈번하게 지목했다. 국가보위성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단독으로 62명을 체포·연행한 기관으로 지목됐다. 중국 공안을 제외한 북한 기관 또는 조직들로만 나열하면 국가보위성, 국경경비대, 조선인민군 보위국(前 보위사령부), 사회안전성,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순으로 지목됐다.

이 조사에서는 113명의 강제실종자가 체포, 연행 또는 북송된 후 실종될 시점의 관할 기관이 어디였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국가보위성 관할 하에서 실종된 경우가 전체의 81.4%(113명 중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실종의 정의와 계속적 성격

법적 정의: 자유 박탈, 국가 관여, 공개 거부

북한을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18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강제실종선언)’을 합의로 채택했다.⁷ 강제실종선언은 모든 국가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했고,⁸ 동 선언의 전문(前文) 문단 3에 기술된 ‘강제실종’의 정의는 내용상 차이 없이 이후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조상 ‘강제실종’의 정의로 확립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제2조에서 ‘강제실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⁹

따라서 ‘강제실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에 반한 자유 박탈
2. 국가기관의 관여
3. 생사 또는 소재 공개 거부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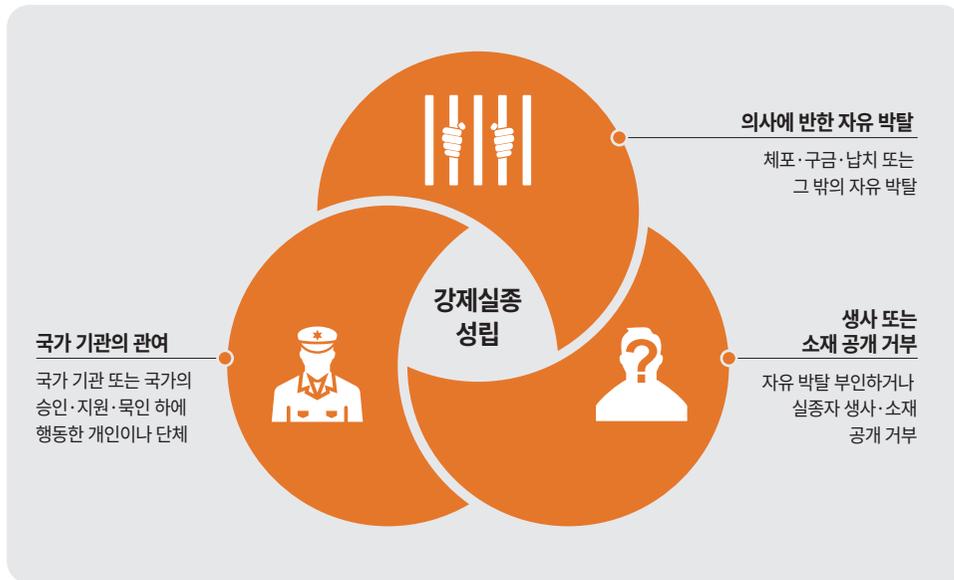
⁷ 하지만 북한은 동 선언 이후 채택된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⁸ UN Human Rights Council (HRC), Fifty-first session,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HRC/51/31/Add.3, August 31, 2022, para. 72, <https://undocs.org/A/HRC/51/31/Add.3>

⁹ “강제실종 국제협약.”

¹⁰ UN HRC,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ddendum: Best practices on enforced disappearances in domestic criminal legislation,” A/HRC/16/48/Add.3, December 28, 2010, para. 21, <https://undocs.org/A/HRC/16/48/Add.3>

차트 3 강제실종 구성 요소



강제실종방지협약 제5조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강제실종 범행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정의된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2항 자호는 강제실종을 반인도범죄로 더욱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¹¹

계속성: 생사·소재 규명까지 끝나지 않는 범죄

강제실종은 계속적 성격이 특히 중요하다. 강제실종 상태는 체포나 납치 시점부터 시작되어 국가가 구금을 인정하고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계속된다.¹² 실종자가 사망하더라도 당국이 생사와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

¹¹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2002년 7월 1일 발효,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2176>

¹² UN HRC,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HRC/16/48, January 26, 2011, para. 39, <https://undocs.org/A/HRC/16/48> (“1.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rototypical continuous acts. The act begins at the time of the abduction and extends for the whole period of time that the crime is not complete, that is to say until the State acknowledges the detention or releases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individual”).

폐하면 강제실종 상태는 계속된다.¹³

강제실종의 계속적 성격은 특히 강제실종협약 제8조 제1항 나호가 규정하듯이 형사절차상 강제실종에 대한 공소시효가 강제실종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강제실종은 자유박탈이나 은폐 기간과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¹⁴ 따라서 강제실종은 장기 구금(prolonged detention)이 아니더라도 형사사법절차의 일부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¹⁵

방지책: 적법절차, 구금장소 통보, 면회

제도적으로 강제실종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적법절차부터 확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체포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 시에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수사관서로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13 UN HRC,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HRC/7/2, January 10, 2008, para. 26, <https://undocs.org/A/HRC/7/2> ("... General comment on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 10. Therefore, a detention followed by an extrajudicial execution, a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an enforced disappearance proper, as long as such detention or deprivation of liberty was carried out by governmental agents of whatever branch or level, or by organized groups or private individuals acting on behalf of, or with the support, direct or indirect,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Government, and, subsequent to the detention, or even after the execution was carried out, State officials refuse to disclose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persons concerned or refuse to acknowledge the act having been perpetrated at all").

14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CED), "Views approved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for communication No. 1/2013," CED/C/10/D/1/2013, April 12, 2016, para. 10.3, <https://undocs.org/CED/C/10/D/1/2013> ("... The Committee further recalls that, in order to constitute an enforced disappearance, the deprivation of liberty must b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such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regardless of the duration of the said deprivation of liberty or concealment").

15 이는 "[사람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요구하는 로마규정 제7조 제2항 자호상 반인도범죄로서 강제실종의 정의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로마규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고지 받아야 하고, 피의사실도 신속히 고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관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고 체포나 구금으로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법원에서 구금의 적법성을 지체 없이 판단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¹⁶ 그러나 많은 독재 국가에서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문서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정치범에게 보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하거나 연행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하는 장소를 가족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회를 허용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 피구금자의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영사보호가 강제실종으로부터의 추가적 보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전제 국가들은 비엔나협약 당사국인 경우에도 영사보호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

16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따르면 제9조 제3항 관련 48시간 이상의 지체는 절대적으로 예외적으로 남아야 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UN 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CCPR/C/GC/35, December 16, 2014, para. 33, <https://undocs.org/CCPR/C/GC/35>;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GAD)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구금자를 체포 후 48시간내로 법관에게 회부하지 않거나 구금에 관한 사법적 심사권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UN WGAD, Eighty-seventh session, “Opinion No. 32/2020 concerning He Fangmei (China),” A/HRC/WGAD/2020/32, September 2, 2020, paras. 37-38,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g20/223/67/pdf/g2022367.pdf>; UN WGAD, Eighty-ninth session, “Opinion No. 78/2020 concerning Kai Li (China),” A/HRC/WGAD/2020/78, January 18, 2021, paras. 49-50,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g21/011/40/pdf/g2101140.pdf>; UN WGAD, Eighty-seventh session, “Opinion No. 34/2020 concerning Abdullah Awad Salim al-Shamsi (United Arab Emirates),” A/HRC/WGAD/2020/34, October 14, 2020, paras. 51-52,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g20/265/68/pdf/g2026568.pdf>; UN WGAD, Ninety-sixth session, “Opinion No. 17/2023 concerning Aïda al-Ghamdi and Adel al-Ghamdi (Saudi Arabia),” A/HRC/WGAD/2023/17, June 8, 2023, para. 72,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etention-wg/opinions/session96/A-HRC-WGAD-2023-17-Saudi-Arabia-AEV.pdf>

북한의 강제실종: 자유 박탈, 국가 관여, 공개 거부

북한 내 강제실종

체포, 구금, 납치

북한에서는 체포이유 고지와 피의사실의 신속한 고지를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독립된 사법부의 통제 등 자유 박탈에 필요한 적법절차 전반이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절차의 무시가 곧 강제실종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법절차가 무시된 체포·연행 단계에서부터 강제실종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북한 내에서 체포·연행된 인원은 90명(79.6%)이었다. 이 가운데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연행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원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이유를 밝히거나 수사관서로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힌 경우는 전무했다.

2016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딸을 중국으로 탈북시킨 여성이 “뭐 좀 물어볼 게 있다”며 집을 찾아온 보위원 3~4명을 따라나선 후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2016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는 패싸움에 연루된 남성이 임의동행으로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도보위부 사람, 시보위부 사람, 동 담당 보위원이 연행하러 온 거예요. 와서 족쇄를 채우지는 않고, ‘그냥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잠깐 가자, 옷 입고 나와라, 문을 다 잠그라’ 해가지고 차 태워서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2012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직장 보위지도원의 호출을 받은 후 실종됐다.

“출근하니 보위지도원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들어간 걸 온데간데 없이 데려갔대.”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아본 한 진술인은 임의동행 후 상황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설명했다.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가는지] 이야기 안 해주죠. 집에 와서 ‘알아볼 게 있는데 같이 가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잘못 됐네’ 생각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일단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해서 들어가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중국 핸드폰 내나라.’ 없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패고픈 대로 패고,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죠.”

2019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탈북한 진술인

이처럼 북한에서는 체포·연행 단계에서부터 강제실종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는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없이 임의동행으로 연행하는 것이 관행화됐거나 주민들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형사소송법 등 명문화된 법령을 편리하게 확인하거나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빈약한 상태이다.

셋째, 관헌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거나 항의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포가 만연해도 북한주민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령 실제로 영장발급과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형사소송법부터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는 체포를 금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76조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점은 체포 영장을 독립된 사법부의 재판관이 아닌 검사가 발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수사기관들은 법원의 승인 없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177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국가보위성은 자체적으로 검찰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위성 검찰국 소속 검사들이 같은 국가보위성 수사국 소속 수사원과 국가보위성 예심국 소속 예심원의 신청으로 얼마든지 체포 영장을 남발할 수 있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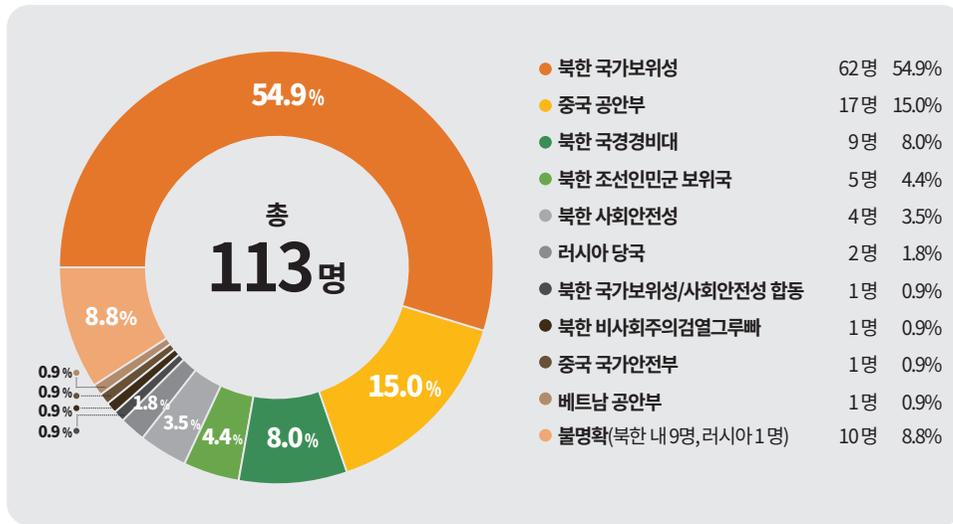
국가보위성과 그 밖의 국가기관들의 관여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113명이 강제실종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국가기관들이 관여했고, 어느 기관이 관할하는 단계에서 실종상태가 됐는지 짚어보았다. 특히, 처음 ‘체포·연행한 기관’과 ‘체포·연행·복송 후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체포·연행한 기관

조사팀은 우선 각 실종자마다 처음 체포·연행한 기관이 어디인지 기록하고 분류했다. 북한 내에서 체포·연행된 인원은 90명, 해외에서 체포된 인원은 23명이었다. 북한 내에

차트 4 체포·연행 기관



서 90명을 체포·연행한 기관들 중에는 국가보위성이 단독으로 가장 많은 61명을 체포·연행한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 외에 국경경비대¹⁷가 9명, 조선인민군 보위국(前 보위사령부)이 5명, 사회안전성¹⁸이 4명,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합동으로 1명, 비사회주의 검열그룹¹⁹이 1명을 체포·연행한 것으로 지목됐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이 체포·연행기관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체포된 23명 중 중국에서 체포된 인원은 19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중국 공

17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여러 차례 소속이 바뀌어왔는데, 김정은 시기에는 국가보위성 산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2년 4월 국경경비총국이 국가보위성으로 이관되었다고 보고했다. 김일기와 김호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36, 44, 97-98,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101/F20210125215025285.pdf>; 2004년 6월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합의서와 2011년 11월 체결한 수정보충 의정서는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총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防委员会武装力量部队边防合作协议”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사이의 국경경비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2004년 6월 28일 체결, <http://treaty.mfa.gov.cn/web/detail1.jsp?objid=1531876977686>; 2022년 12월 미국은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을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Sanctions Over 40 Individuals and Entities Across Nine Countries Connected to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 press release, December 9, 202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155>

18 북한의 사회안전성은 치안경찰에 해당하고, 주민들은 흔히 ‘안전부’라고 부른다.

안부, 1명은 중국 국가안전부, 1명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보위원이 체포한 것으로 지목됐다. 러시아에서는 3명으로 체포됐는데, 이 중 2명은 러시아 당국이 체포한 것으로 지목됐고, 1명은 진술인이 기관을 특정하지 못했다. 베트남에서는 1명을 베트남 공안부가 체포한 것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 4개국의 특정된 9개 국가기관들 중에서는 <차트4>와 같이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과반수(54.9%, 113명 중 62명)의 체포·연행을 단독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되기 전 피심자를 데려간 자들이 국가보위성(2016년까지 ‘국가안전보위부’였고, 주민들은 흔히 보위부라고 부름) 소속이라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진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이지 않게 데려가는건 보위부예요.”

2020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탈북한 진술인

“밤에 와서 가만히 데리고 간다고요.”

2013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탈북한 진술인

“거기[보위부]는 [소속] 밝히고 그러는 거 없어. 똑똑 두드리고 나오라고, 탁 채워가지고… 밤에 잡아가는 건 안전부에서 안 그래요. 안전부는 당당하게 오라고 해서 가족들한테 밥 싸오라고 그러지. 보위부는 몰래 밤에 가져가니까 보위부라는 거 다 알지.”

2011년 평안남도 북창군에서 탈북한 진술인

“까만 차[로] 가져갈 때는 [보위부라는 것을] 알아요.”

2005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탈북한 진술인

한편,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성 요원 등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중국으로 파견해 납치를

별이기도 한다고 알려져 왔다.¹⁹ 탈북 난민들 속에 침투하기 위해 자신들도 탈북한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중국 경찰 행세까지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²⁰

한 진술인은 2021년 중국에 있을 때 국가보위성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몸을 숨겨야 했다고 한다.

다른 진술인은 2009년 중국으로 탈북한 동생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 동생에게 전화를 걸자 북한말을 쓰는 의문의 남자가 받았고 통화를 넘겨 받은 동생은 아무 말 못했다고 한다. 진술인은 그가 중국에서 암약하는 북한 보위원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진술인은 1년 후,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동생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체포·연행·북송 후 실종 시점의 관찰기관

조사팀은 다음 단계로 체포·연행된 피심자의 신병이 다른 기관으로 인계된 경우, 어느 기관인지 기록하고 분류했다. 해외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경우에는 신병을 넘겨받는 북한측 기관을 기록했다. 이는 각 진술인이 직접 알아보았거나 제3자를 통해 파악한대로 기록했다.

북한주민이건 탈북민이건 자신의 가족을 끌고 간 당국은 어디이고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힘겹지만 부단하고 다양하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면담한 진술자들은 특히 실종자가 가족이거나 각별한 친척인 경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에서 함께 살던 중에 가족·친척이 체포·연행된 경우는 당시에 직접 백방으로 알아

19 홍윤오, “탈북자 「체포조」/북, 중국에 급파/관계당국이 밝힌 충격내용,” *한국일보*, 1994년 8월 6일, <https://www.hanookilbo.com/News/Read/199408060021414440>; 주성하, “北 탈북자 체포조 2000명 中 암약… 탈북자 위장 2인1조로 색출 활동,” *동아일보*, 2012년 2월 16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20216/44078580/1>; 정영, “북 보위부 ‘탈북자 체포조’ 중국서 활약,”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5월 6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arrestteam-05062015154916.html; 김명성, “간수와 죄수 동반 탈북에 北 발각… 중에 체포조 보내 ‘참빗 작전’,” *조선일보*, 2019년 9월 11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0292.html.

20 “북, 탈북자 색출전문 ‘미행조’ 운영,”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8월 20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08202015094708.html

본 경우와 가족, 친척, 지인의 도움으로 알아본 경우가 많았다. 뇌물이나 인맥으로 부탁한 기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특정해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우회적 언급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는 북한 내 가족 또는 친척과의 전화 통화, 북한 내부로 연락선이 있는 중개인들을 써서 알아보는 경우도 많았다.

진술인들이 실종자의 소재나 생사를 알아보려고 시도했으나 기관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더 알 수 없게 된 지점을 조사팀은 실종 단계로 기록했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시도하지 않은 경우 불명확으로 분류했다.

‘체포·연행·복송 후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내에서 국가보위성이 단독으로 체포·연행한 61명은 보위성 내 상하급 기관으로의 내부 인계만 있었을 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인계됐다는 경우는 없었다.

반대로 다른 기관들에서 국가보위성으로 피심자를 인계한 경우는 많았다. 각 기관마다 피심자를 심문하다가 정치적 범죄 요소가 있으면 국가보위성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경경비대가 체포한 9명과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합동으로 체포한 1명은 모두 국가보위성으로 인계됐다. 조선인민군 보위국²¹에 체포됐던 5명 중 1명은 민간인이어서 국가보위성으로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베트남에서 체포된 23명 중 20명은 복송되어 모두 국가보위성에 넘겨졌다.²² 따라서 조사팀은 이상의 31명이 체포·연행·복송 후 북한의 국가보위성으로 인계된 것으로 기록했다.

한편, 조선인민군 보위국은 체포한 5명 중 군인 신분인 4명만 취급했고, 사회안전성이 체포한 4명은 자체 구류장에 구금된 후 실종됐다고 한다. 체포·연행기관이 불명확하던 10명 중 9명은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 역시 불명확 상태로 남아 있다. 비사회주의적결연

21 조선인민군 보위국은 군사적 방첩기관이자 군 검찰기관인 바, 군인에 대한 체포, 수사, 처벌을 전담한다.

22 나머지 3명은 중국에서 체포된 후 구금된 위치와 관할기관을 알 수 없는 실종상태였지만 1년 후 한국 입국에 성공해 실종이 해소됐다.

루빠가 체포한 1명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 어느 쪽에 인계됐는지 불명확해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차트5>와 같이 국가보위성이 직접 체포·연행한 인원과 북한의 다른 기관들과 외국 당국들로부터 인계 받은 후 실종된 인원까지 국가보위성 관할 하에서 실종된 경우가 전체의 81.4%(113명 중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위성이 광범위하게 저지르는 강제실종에는 체포나 연행 단계로부터 동네 단위의 인민반과 공장·기업소에 파견된 개별 보위원, 시군 보위부, 도 보위국, 전국 단위의 국가보위성 등이 다층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비사회주의검열그룹도 국가보위성과의 연계성이 짙다. 검열그룹은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에서 차출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 등 ‘비사회주의’ 활동을 단속하고 영장 없는 수색과 구속으로 강제실종을 벌이는 공포의 대상인데, 그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는 베일에 쌓여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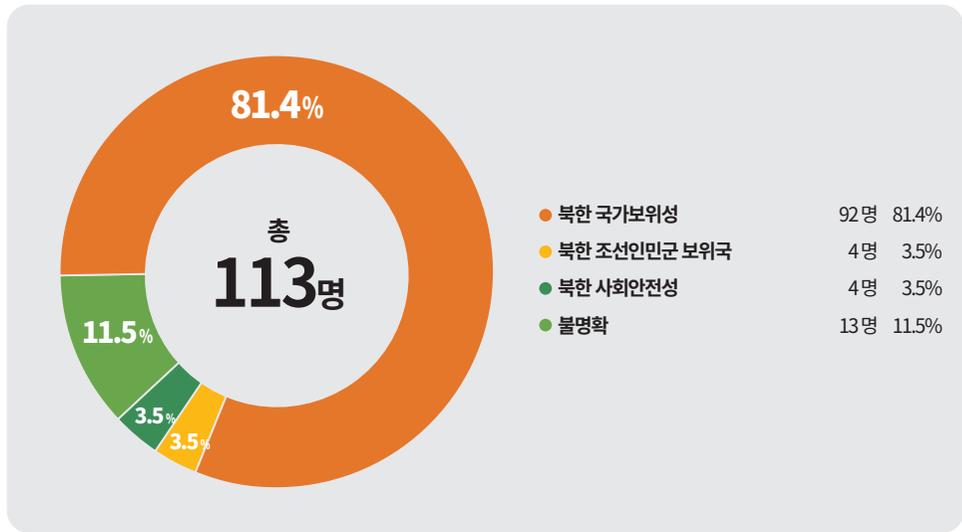
특히, 수사-예심-기소-재판의 4단계로 되어 있는 북한 형사사법절차 중 주로 국가보위성이 관할하는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체포나 연행 이후에 주로 예심²⁴ 단계에서 강제실종이 집중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사건과 그 피심자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보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북한 형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고, 제61조(국가전복행위죄), 제63조(조국반역죄), 제66조(반국가

23 전영선 외 3인, 『북한 지식사전(2021)』의 “비사회주의의 그루빠” (서울: 통일부 국립교육원, 2021), <https://nkinfo.unikorea.go.kr/nkp/pblicitn/view.do;jsessionid=jAoDOhzvUqsAN70ACTDOWZJGmscBongXKWn82J3n.ins12?menuId=OC002&pblicitnNo=192>;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서울: 통일부, 2024), 47-49.

24 북한 형사소송법 제144조(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차트 5 체포·연행·복송 후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



선전, 선동죄), 제70조(민족반역죄)가 포함된다.

북한에서 ‘정치적 범죄’는 정치적 변혁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조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최고령도자’인 김씨 일가의 사생활 소문을 입에 담거나 그들의 지시, 당정책, 국가정책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말 반동’으로 몰리고, 종교 활동을 하거나 외부 문화를 즐기거나 외부 세계와 연락하는 행위까지 정치적 범죄로 처벌된다. 또한 ‘헌법’과 ‘조선로동당규약’보다도 우선하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²⁵에 따라 김정은의 권위를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형사소송법 제14조는 국가보위성 소속의 수사원과 예심원도 수사와 예심에서 검사의 감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1974년 공포됐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규정했다. 김정일은 제1원칙을 “은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고쳐 대를 이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규정했다.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2013년 개정으로 추가됐다.

형사소송법 제14조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재판까지 보위기관이 담당한다는 탈북민의 진술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은 보위원 출신 탈북민이 “국가보위성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 명의로 판결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²⁶ 정치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람은 국가보위성에서 처형하거나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²⁷에 무기한 수감되어 강제실종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가보위성이 경찰, 검사, 판사, 배심원, 집행인 역할까지 모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고 당이 국가 전반을 감시하는 ‘당-국가 이중구조’가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작동하는 것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심각한 문제점이다. 장식적인 법 절차나 존재가 비교적 노출된 국가기관들과는 별개로 구류, 예심, 기소, 재판 과정이 막후에서 당 안전위원회와 당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²⁸

통보 부재와 정보제공 거부

전환기정의위키킴그룹이 조사한 사례들은 북한 당국이 북한의 법에 규정된 체포, 구속 사유와 구금장소의 가족 통지 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보 부재는 가족들이 피해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알아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함께 사는 가족이 체

26 이우태 외 9인, 『북한인권백서 2023』 (서울: 통일연구원, 2023), 141; 2006년 한국의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탈북민 면접조사에서는 국가보위성 간부와 검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위성 사건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은 관할 재판소 명의로 기재된다는 진술이 있었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31; 이규창과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100에서 재인용.

27 통일연구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의 이전 명칭) 7국이 관리소 수용자의 선정과 관리를 담당한다고 보고했다. 도경옥 외 4인 『북한인권백서 2015』 (서울: 통일연구원, 2015), 99.

28 강한, “북한법 잘 알지만 남한에 전문성 발휘할 시스템 없어...: 김은덕 前북한 검사가 밝힌 북한 사법체계,” *법률신문*, 2021년 6월 28일, <https://www.lawtimes.co.kr/news/170900> (“사건에 대해서는 예심에 넘어가기 전에 열리는 당 안전위원회가 양정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사건 수사와 예심은 반드시 검사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안전부는 수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 발급도 검찰소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수사·예심·기소·판결까지 이루어진다. 판결은 당 책임비서가 비준한다”); 특정 사건을 정치범으로서 국가보위성에 회부할지 여부를 보위부장이 포함된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법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탈북민의 진술도 있다. 『북한의 형사법』, 31; 『북한형사재판제도』, 100에서 재인용.

포나 납치를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구금 사실을 알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더라도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취조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어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늦을 때가 비일비재하다.

피구금자의 가족에게도 기본적인 상황조차 밝혀주지 않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강제실종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구제 조치를 시도할 수 없게 단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진술인들은 인맥을 동원하거나 뇌물을 바치는 불법적 수단 외에는 면회는 물론 피구금자의 생사나 소재조차 알기 어렵고, 당국에 어떠한 문제나 의문을 제기할 생각도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본인들도 끌려가 강제실종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79조는 체포, 구속시 48시간내에 체포, 구속된 피심자의 가족에게 체포, 구속 사유와 구속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과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그러나 법과 실재는 다르다. 통보 대신 가족이 조사 목적으로 불려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2011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형부와 함께 체포됐다가 조사받고 혼자 풀려났던 한 진술인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신이 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안 와 집에서 속 타는 거죠. 5일 더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대요.’”

진술인의 언니도 형부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보위부에 추가로 불려가서야 남편이 구

차트 6 북한 국가보위성에 의해 강제실종에 이르는 과정



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기관원들이 집으로 조사하러 나오고서야 알게 되기도 한다. 다음은 2013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의 사례이다.

“잡혔는지 모르고 있었죠. 핸드폰도 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한 달 지나서 너무 이상해서 찾아가 보려고 그러던 찰나에 군대 보위부(조선인민군 보위국)에서 온 거예요. 5~6명이 조사하러 집으로 와서 알게 됐어요.”

수소문해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가 실종됐다. 가족들이 행방을 수소문해서야 그가 보위부에 구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데려갔냐고 수소문을 해서 보위부에 잡혀갔다는 걸 알게 됐죠.”

2000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북한서적을 인접한 중국으로 넘겨서 팔던 한 남성이 밤중에 끌려갔는데, 친척 중 한 명이 보위지도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부탁해 그가 보위부

에 구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촌오빠가 [학교]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당에도 있고 보위부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서 알아봐서 안단 말이에요.”

수소문으로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도 실제로 찾을 수는 없었던 경우도 있다. 2011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한 어머니가 두 자녀(7세, 5세)와 탈북하려다 체포됐다. 가족들이 행방을 찾으러 나섰고 간수 한 명으로부터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매년 여러 고아원을 찾아봤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애들 행방만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보냈는가 하나 그 간수가 그랬대요. 고아원에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고아원에 보냈는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같은 2011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는 한 할머니가 두 명의 손주를 데리고 탈북하려다 체포됐다. 체포됐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이 지역 보위부를 찾아가 확인을 부탁했지만 그런 일 없다고 하여 찾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라도 내놔달라고 보위부 갔는데, 시끄럽다고 가라고, 그런 일 없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몰래 붙잡았는데 너네가 어떻게 아냐?’고 [잡아떼지만].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퍼진단 말이야. 아니까 [우리가] 보위부에 가서 해봤지.”

구금 사실조차 모르다가 보위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가족들에게 먼저 접근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혜산시의 한 여성은 보위원이 집으로 찾아와 100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서야 남편이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위부 애들이 자기네들 돈 처먹기 위해 와이프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위부에 있다는걸 알았거든.”

이상의 모든 사례는 법과 현실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의 이번 조사에서 피심자의 체포나 구금이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가족들이 다른 경로로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국가보위성이 관할하는 경우에는 체포 시점부터 면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휴대전화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다가 2017년 양강도 헤산시 도보위부에 잡혀간 친구가 있는 한 진술인은 이렇게 말한다.

“일체 못 가요. 못 들어가요. 보위부는 절대 못 들어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보위부는 면회가 일절 없어요. 면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015년 중국에서 복송된 아들이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에 구금된 것을 보위부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진술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보위부는 면회 같은 거 없어요. 결핵이 왔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 보위부에 있는 사람 통해가지고 돈 쥐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빼어만 달라, 요구하는 돈을 여기서 어떻게 서든 내보낼테니까 빼어만 달라’ 사정해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다시 알아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 것 같지 못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10년 탈북을 준비하다가 양강도 헤산시 시보위부에 잡혀간 여동생과 어머니를 찾으려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면회도 못 하고요. [삼촌이] 보위부 지도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포기하라고.”

2008년 중국에서 복송되어 함경북도 회령시 시보위부에 구금된 아내를 찾으려고 하던 남성의 사정을 아는 한 진술인은 이렇게 말한다.

“면회 안 돼요. 정치나 한국 [관련 사건] 이면 면회가 안 돼요. 일반 범죄는 면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해마다 방침이 내려오면 바뀌거든요. 면회 됐다가 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애는 면회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있을 때는 면회가 됐거든요. 하지만 정치범은 면회가 안 돼요.”

예외적으로 면회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법으로 보장된 절차가 아니라 상당한 뇌물을 주어야만 가능했다고 한다. 한 진술인은 2020년 양강도 헤산시의 도보위부에 갇혀 있던 시누이를 가족이 면회했지만 뇌물을 많이 주고서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주고 면회할 수 있었지만 특정 단계까지만이었다는 진술도 있다. 딸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2016년 양강도 헤산시 시보위부에 잡혀간 사례에서는 예심 전까지만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면회는 자주 했죠. 우리 언니 딸들이 매일 밥 싸서 가고. 일단 예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체 못 하죠. 수사 단계 때는 많이 만나고 그랬죠.”

물품을 지정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에서는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자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토바이는 여기(남한) 돈 150만원이면 되는데 [보위부가] 그 돈도 없어서 못 사더라고요. 보위부 수사과에서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랬다고.”

뇌물을 주어도 ‘대리면회’만 가능했던 사례로 있다. 2011년 양강도 헤산시의 도보위부에 구금되어 있던 언니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한 진술인은 보위부를 끼고 사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직접 면회할 수는 없었고, 뇌물을 전달했던 지인이 이 가족을 대신해서 한 번만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뇌물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뇌물 주고 면회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뇌물을 주어도 면회는 못하고 음식만 전달할 수 있었던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2010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잡혀간 형부를 면회하려고 시도했지만 직접 만남은 불허됐던 한 진술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면회를 다니게 되면 밥만 받아주고 얼굴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다가 ‘없으니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보위부에 구금된 이후 다른 곳으로 이감되는 상황이나 생사 여부를 알아보려고 시도한 가족들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던 경우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말을 들은 경우가 있었다. 소재나 생사조차 가족들에게 은폐되는 상황에 이르면 명백하게 강제실종 상태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을 뭐하러 찾아당겨?”라고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보위부에서 ‘찾지 마라.’ 보위부에서는 아는 거죠.”

2016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체포된 후 실종된 제부에 대한 진술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갔는지 안 알려준다. OO이 간 데가 그런 곳[정치범수용소] 같다.”

2007년 탈북을 준비하던 중 체포된 후 실종된 어머니에 대한 진술

가족의 구금 여부나 구금 장소를 확인하거나 면회를 하는 것조차 포기한 경우도 많다. 특히 국가보위성에 체포된 것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그 존재와 악명이 알려져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남편만 데리고 갔으면 솔직히 우리도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통짜로 갔으니까. 가족이 통짜로 갔다는 건 그냥 바로 관리소로 갔다는 거예요.”

2021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체포된 후 실종된 남성과 그의 가족들(아내, 딸)에 대한 진술

“여기 없다고 하고, 면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관리소로] 갔다고 알지. 어디 갔다는 건 어디서 물어봐요. 접수에서부터 벌써 빠꾸 먹는데.”

2010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체포된 후 실종된 형부에 대한 진술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고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없으면 정치범 그런 곳으로 가서. 영영 못 나오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2008년 중국에서 복송 후 실종된 여성에 대한 진술

COI 보고서의 결론이 지적했듯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정권이 벌여온 강제실종의 대명사가 됐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잡혀간 사람의 생사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보위부라 하면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아, 정치범이구나’ 하면서 찾는 거는 고사하고 남은 가족 전멸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2000년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체포된 후 실종된 지인에 대한 진술

조사팀은 피심자가 구금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진술인들에게 물어보았다. 국가보위성 관할 하에서 구금 중이던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진술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례는 총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는 7건, 통보 받은 경우는 2건이었다.

시신은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8건이었고, 시신 인도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건이었다. 사망자의 시신을 받아 가족이 장례를 치렀다는 경우는 1건이었다. 2020년 양강도 혜산시 도보위부에서 사망한 남성의 시신이 아내에게 인도된 사례였다.

탈북 난민의 초국가적 강제실종: 중국, 러시아 등 외국 국가기관의 방조

외국 당국에 체포·구금되거나 복송되는 탈북 난민들도 강제실종 위험이 매우 크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현지 당국이 탈북 난민을 체포해 강제송환하는 것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 제8조²⁹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다. 특히, 복송하기 전의 구금 기간 동안 각국 당국이 탈북 난민의 자유 박탈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구금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은폐하는 것은 강제실종범죄에 해당한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23명(20.4%)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당국에 체포되거나 일부는 해외로 파견된 북한 요원들에게 체포되면서 실종이 시작됐다.

중국

이 조사를 통해 중국에서부터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19명이다. 중국公安部 소속 인민경찰(人民警察)은 그 중 17명의 강제실종에, 중국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는 1명의 강제실종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일관되게 탈북 난민을 검거해 복송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북한이 2020년 1월 국경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강제송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은 중국 내 각지에 머물던 탈북민들을 감시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검거와 구금을 지속했다. 그리고 2023년 북한이 국경 일부를 다시 열자 강제송환을 재개했다. 2023년 10월에 이르러 중국은 탈북 난민이 주를 이루고 있던 500~600명을 대거 복송했다.

2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 제8조 1. 어떠한 국가도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 2.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관련국에서 중대한, 극악한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의 지속적 양상의 존재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중국 당국은 중국이 탈북 난민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할 조약상 법적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개정되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합의서 제4조는 비법월경을 막기 위해 정당한 증명서 없이 국경을 넘는 사람은 비법월경자로 처리하고 비법월경자들의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제4조 쌍방은 비법월경을 막는데서 호상 협조한다.

1. 정당한 증명서를 가지지 않았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 지적된 통행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은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은자들은 비법월경자로 처리한다.
2. 비법월경자들의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 그러나 그가운데서 상대측 지역에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할수 있으며 그 정형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은 그에 따라 강제송환이 정당하다고 강변하지만, ‘합의서’ 제10조는 5년마다 이 ‘합의서’가 자동 연장되기 6개월 전에 무효 통지를 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얼마든지 ‘합의서’를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제3국들이 자국으로 탈북 난민들을 재정착시켜 왔고 계속 환영할 것이라고 공약해왔음을 알면서도 길목을 차단하고 강제송환하는 잔인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관습법과 중국이 당사국인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규범과 충돌하

30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安全保卫部 关于在边境地区维护国家和社会秩序的工作中相互合作的议定书” [Mutual Cooperation Protocol for the Work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in the Border Areas], signed July 8, 1998, <http://treaty.mfa.gov.cn/Treaty/web/detail1.jsp?objid=1531876990894>

는 조약은 무효이다.³¹ 이는 강제실종선언 제8조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 난민을 체포, 구금해 취조한 후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 변경관리지대(边境管理支队)(줄여서 ‘변관지대(边管支队)’) 및 변경관리대대(边境管理大队)(줄여서 ‘변관대대(边管大队)’)를 거쳐 북한 측에 인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추방 전 구금 기간 중 가족에게 구금 여부나 장소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의 구금은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다.

러시아

이 조사를 통해 러시아에서부터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3명이다. 러시아 당국은 그 중 2명의 강제실종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달리 북한 사람들에게 난민지위인정심사(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신청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으며 일부는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하지만 러시아 인권단체 시민지원위원회(Комитет «Гражданское содействие»)

31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Thirty-third session, “General Conclusion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25 (XXXIII) – 1982 (20 October 1982),” 12A (A/37/12/Add.1), October 20, 1982, <https://www.unhcr.org/publications/general-conclusion-international-protection-17/> (“(b)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was progressively acquiring the character of a peremptory rule of international law”);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dvisory Opinion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January 26, 2007, <https://www.refworld.org/policy/legalguidance/unhcr/2007/en/40854/> (“21.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lso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ich has attained the rank of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or jus cogens. It includes, as a fundamental and inherent component, the prohibition of refoulement to a risk of torture, and thus imposes an absolute ban on any form of forcible return to a danger of torture which is binding on all States, including those which have not become party to the relevant instruments”).

32 2018년 이전에는 공안부 4국 변방관리국(边防管理局) 소속 현역 무장경찰 신분의 변방부대(边防部队).

에 따르면, 2011~2019년 기간에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 207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2011년 1명에게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같은 기간 북한 사람 305명이 임시 망명을 신청해서 213명만 승인받았는데, 임시망명 신청건수도 2011년 43건, 2012년 64건에서 2018년 23건, 2019년 20건으로 감소했다. 독립성이 없는 러시아 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추방 결정을 내리고 있다.³³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로 북한으로 추방되는 경우 외에도 러시아 경찰 등 개별 러시아 관리들이 납치하고 러시아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에게 인계해 북송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러시아 대외건설사업소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어 러시아 법원의 추방 결정에 따라 북송된 사례가 있다.³⁴

러시아 당국이 추방 전 구금 기간 중 가족에게 구금 여부나 구금 장소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당국의 구금은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2015. 11. 17. 서명, 2017. 3. 24. 발효),³⁵ 범죄인 인도 조약(2015. 11. 17. 서명, 2017. 3. 24. 발효),³⁶ 불법 입국자 및 체류자의 이송 및 인수 조약(2016. 2. 2. 서명, 2017. 8. 7. 발효),³⁷ 자유박탈형 선고받은 자 인도 조약(2017. 5.

33 Svetlana Gannushkina, Konstantin Troitsky and Moonyoung Lee, *Report: "One recognized refugee in nine years. Overview of the situation with refugees from the DPRK (North Korea) in Russia"* (Moscow: Civic Assistance Committee, 2020), https://refugee.ru/wp-content/uploads/2020/09/DPRK-Refugees_English.pdf

34 Ibid.

35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ВЗАИМНОЙ ПРАВОВОЙ ПОМОЩИ ПО УГОЛОВНЫМ ДЕЛАМ”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 2015년 11월 17일 서명,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43707

36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ВЫДАЧЕ”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2015년 11월 17일 서명,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43706

37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ЕРЕДАЧЕ И ПРИЕМЕ ЛИЦ, НЕЗАКОННО ВЪЕХАВШИХ И НЕЗАКОННО ПРЕБЫ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불법 입국자 및 체류자의 이송 및 인수에 관한 조약], 2016년 2월 2일 서명,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43686

12. 서명, 2019. 4. 19. 발효)³⁸을 체결했다.

특히, 2016년 불법 입국자 및 체류자의 이송 및 인수에 관한 조약은 러시아내 북한 사람들의 임시 망명 신규 신청이나 연장 거부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³⁹

2016년 2월 15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러시아와 북한에 이들 조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두 정부는 답하지 않았다.⁴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전면 침공과 북한의 포탄, 미사일 수출에 따른 밀착 이후로도 러시아는 아직 중국처럼 공식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난민지위인정 심사 신청을 막는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망명 신청자를 현상 수배된 범죄인으로 복송하여 사실상 신청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 우려된다.⁴¹

한국

한국은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을 국민으로 간주해 보호, 지원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2019년 11월 7일 탈북 전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우범선, 김현욱 2인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과거에도 한국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사람들 중 귀순 의사 없이 표류한 것으로 알려져

38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ПЕРЕДАЧЕ ЛИЦ, ОСУЖДЕННЫХ К ЛИШЕНИЮ СВОБОДЫ” [로씨야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자유박탈형 선고받은 자 인도에 관한 조약], 2017년 12월 5일 서명,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52773

39 이경하, “러시아, 9년간 탈북민 1명 난민으로 인정,”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10월 21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russiankregugee-10212020160833.html

4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L RUS 1/2016, February 15, 2016,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d=17335>; OHCHR,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L PRK 1/2016, February 15, 2016,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d=17685>

41 김지은, “러, 북 외교관 가족 체포위해 항공기 회항,” *자유아시아방송*, 2023년 7월 19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arrest-07192023095130.html

송환된 사례에서 귀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⁴²

현재 한국 국내법원에서는 2019년 강제송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의 송환 이후 생사와 소재 확인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국내법 도입이나 한국 정부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자유가 박탈되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구금에 대한 사법 심사 같은 제도 개혁이 요원하다.

42 안준호, “작년 표류해 越境한 北 주민 22명 北送 의혹,” *월간조선*, 2009년 11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v.asp?nNewsNumb=200911100012>

북한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유

북한에 강제실종이 만연한 이유는 자명하다. 작은 사건이나 실수도 ‘당의 유일적령도체 계확립의 10대원칙’에서 말하는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반한다고 지목되면 정치적 범죄로 비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그들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며 수시로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놀랍지 않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이번 조사의 심층면담 기록을 분석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유를 살폈다. 조사팀은 가족이나 지인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당시에 진술인이 알았거나 이후에 여러 방법으로 파악한 체포 또는 처벌 이유를 토대로 강제실종 이유를 세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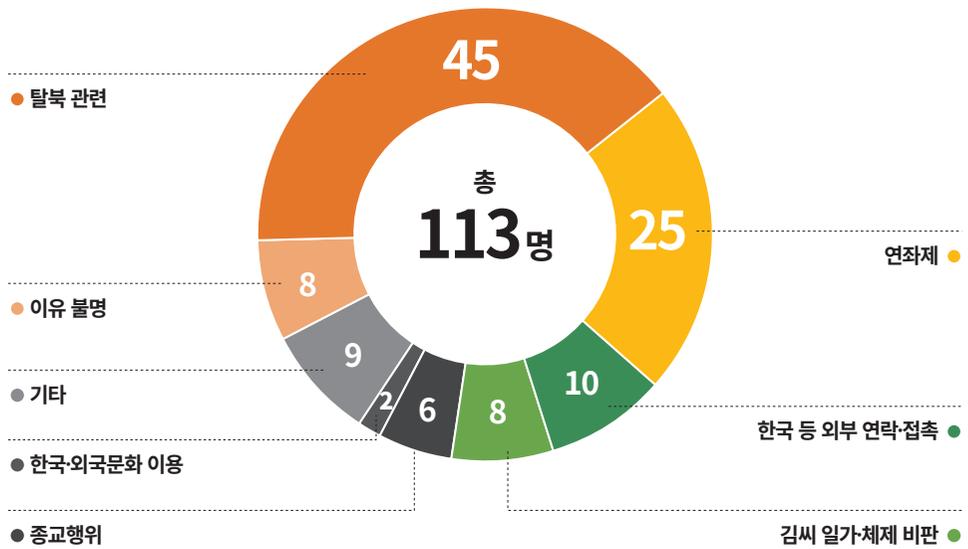
〈차트7〉처럼 분류한 결과, 탈북 관련 강제실종(45명, 39.8%)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탈북 후 송환(21명), 탈북 시도(12명), 탈북 준비(7명), 탈북 도움(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송환한 후 실종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강제실종은 북한 내에서 벌어졌더라도 실종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연좌제로 인한 강제실종(29명, 25.7%)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행위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까지 실종시키는 문제를 심각하고 강력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한국 등 외부 연락·접촉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10명, 8.8%)이었다.

기타의 이유를 제외하면 네 번째는 김정은 일가와 체제 비판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8명, 7.1%)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이 혐의

차트 7 북한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유



에 대한 북한 당국의 최종 처벌은 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6명, 5.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들은 북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은 김정은 일가의 권력 존속을 위한 체제 유지 목적 아래 벌어져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북한에서 무수하게 벌어져온 강제 실종범죄의 최대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아래에서는 각 이유별로 강제실종이 벌어지는 과정과 특징을 설명한다.

탈북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이번 조사로 중국, 러시아 등에서 체포된 직후나 북송된 후 강

제실종된 23명의 사례를 기록했다.

북한은 당국의 승인 없는 출국을 ‘국경비법출입죄’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망명 시도나 한국인 또는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경우는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정치범으로 가혹하게 다룬다.

형법 제260조 (국경비법출입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

조국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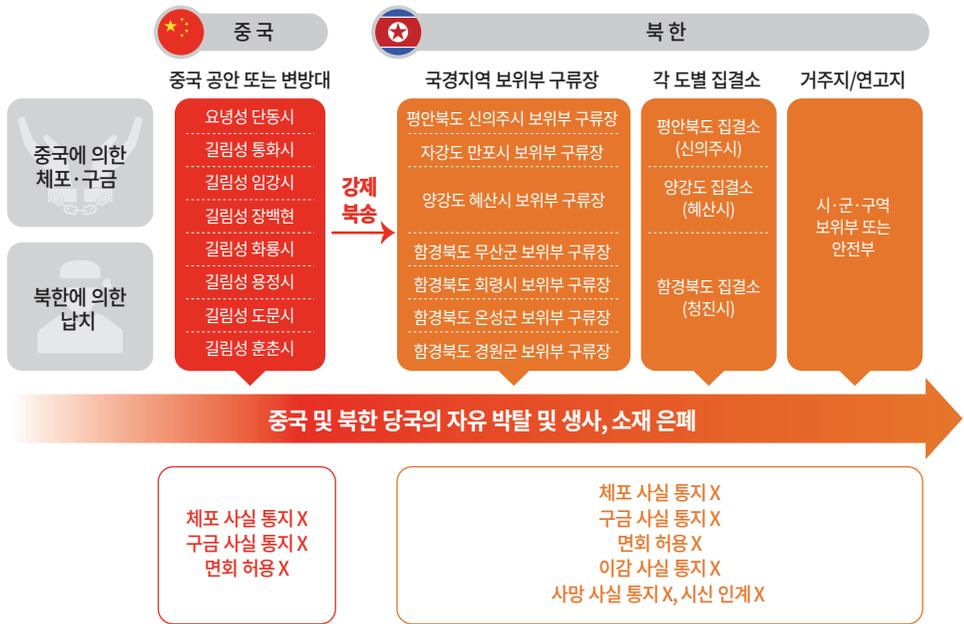
북송되는 탈북 난민의 대다수는 중국-북한 간 국경을 통해 북한의 국가보위성으로 넘겨지는데 각 단계에서 중국과 북한의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실종을 당한다.

북송된 사람들은 먼저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된다. 이 때는 중국 당국이 작성해 북한에 넘겨준 정보를 기초로 취조를 받는다. 이러한 국경지역 보위부 조사 단계에서 한국행 시도, 한국인 접촉, 선교사 등 종교인 접촉 같은 혐의를 시인하면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국가보위성이 계속 관할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버티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분류되어 사회안전성으로 넘겨진다.⁴³

피심자가 국경지역이 아닌 타 지역 출신일 경우에는 거주지로 이감되는 것이 일반적이

43 예를 들어 2017년 중국에서 북송되어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 취조 받았던 한 진술인은 딸을 찾으러 중국으로 갔던 것일 뿐 한국에 가려던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둣발에 걸어차이며 같은 내용을 한 달간 반복 취조 받았지만 끝까지 버티지 보안서(사회안전성)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제서야 지인들이 면회를 올 수 있었다. 가벼운 형인 6개월 노동단련형을 받았지만 뇌물을 써서 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차트 8 중국의 강제송환과 북한 내 이감 과정의 강제실종



다. 국가보위성은 거주지의 보위원들이 신병을 인계받으러 올 때까지 이들을 도별로 운영하는 집결소에 모아두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거주지로 인계되면, 거주지의 보위원들이 다시 취조하는 것이 전형적이다.⁴⁴

이러한 여러 이감 단계에서 어느 기관도 복송된 사람의 구금 상황을 가족에게 정식으로 통보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구금 사실과 행방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거주지 시, 군, 구역의 보위부에 넘겨진 단계에서가 대부분이었다. 거주지 보위부에서는 피심자를 취조하다가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피심자의 가족을 찾아 몇 가지 물을 때가 있다. 몇몇 진술인은 이 때 자신의 가족이 복송되어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사례1〉은 다섯 번의 구금 중 네 번째 구금 단계에서야 보위부에서 일하는 친척이 있

⁴⁴ 비정치적인 범죄 혐의자로 간주되면 사회안전성으로 넘겨지는데, 신병이 관할 거주지까지 인계되는 과정은 비슷하다.

사례 1 중국의 복송 후 강제실종된 A씨의 이감 경로



몽골



① 체포
장소: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 길 (위치 미상)
시기: 2015년 (날짜 미상)
 수소문해도 행방 알 수 없었음.
 몽골로 가는 길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복송 후 청진 도보위부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음

③ 2차 구금

장소: 길림성 도문 변방대 추정
시기: 2015년 (날짜 미상)
 진술인 본인과 지인들의 복송
 경험을 통해 도문 변방대를 거쳐 복송
 되었을 것으로 추정

② 1차 구금

장소: 중국 감옥 추정 (위치 미상)
시기: 2015년 (날짜 미상)



④ 3차 구금

장소: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추정
시기: 2015년 (날짜 미상)
 진술인 본인과 지인들의 복송 경험을
 통해 복송 후 온성군 보위부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

도문



온성



⑤ 4차 구금

장소: 함경북도 청진 도보위부
시기: 2015년 (날짜 미상)
 보위부에서 일하는 친척이 있는
 지인을 통해 행방을 알게 됨.
 결핵으로 힘든 상태라는 소식을 들음

청진



⑥ 5차 구금

장소: 관리소 추정
시기: 2016년 추정 (날짜 미상)
 다 죽어가는 사람을 관리소로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그 이후 소식은 알 수 없음

피해자 A

2015년 탈북 후 2-3일에
 한 번씩 가족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갑자기 연락이 끊어짐



는 지인을 통해 가족의 행방을 들은 경우이다. 진술인에 따르면, 탈북한 아들 A씨와 2~3일에 한 번씩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2015년 몽골 쪽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 행방과 북송 여부를 알 수 없다가 반년 후 북한 보위부에 친척이 있는 지인을 통해 그가 북송되어 구금됐음을 알았다. 계속 돈을 마련해 뇌물을 전하며 상황을 알아보던 끝에 2017년 마지막 소식을 들었다. 이미 한 해 전에 관리소로 보내졌다는 전언이었다.

〈사례2〉는 중국의 은신처에서 함께 체포되어 북송된 후 중국에서의 종교행위 혐의로 다섯 번의 구금 끝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경우이다. B씨와 함께 체포됐지만 한국행 시도나 종교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도중에 풀려난 진술인이 그의 가족에게 이후 행방을 물어보고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례 2 중국에서의 종교활동 혐의를 받은 B씨의 복송 후 강제실종 과정

피해자 B



- 탈북 후 중국에서 성경교육
- 북한 당국이 피해자 B의 종교행위에 대해 이미 파악

① 체포

장소: 장춘 숙소

시기: 2010.10.00

사복 입은 중국 장춘 국가안전부 심 여명이 집으로 와서 피해자 B와 진술인, 지인 체포

1 장춘

중국

2 ?

② 1차 구금

장소: 중국 국가안전부 (위치 미상)

시기: 2010.10.00 (약 3일간)

피해자 B와 진술인 함께 이송됨

③ 2차 구금

장소: 길림성 백산시 정신심리구류소

시기: 2010년 10월 (약 한 달간)

피해자 B와 진술인 함께 이송됨

④ 3차 구금

장소: 길림성 임강 변방대

시기: 2010.11.00 (약 2일간)

진술인이 먼저 임강 변방대로 이송되고, 피해자 B 며칠 후 이송. 다음날 함께 복송됨

백산

3

4 임강

5 헤산

6 청진

⑤ 4차 구금

장소: 양강도 헤산 도보위부

시기: 2010.11.00 - 2011년 9월 추정

보위원이 피해자 B의 가족을 찾아 와서 피해자 B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있는지 조사

⑥ 5차 구금

장소: 함경북도 청진 관리소 추정

시기: 2011년 9월부터로 추정

보위부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행방을 알아보았으며, 이 이후 소식 알 수 없음

탈북 시도

김정은 정권은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이래 약화되어 있던 북·중 국경의 통제 고삐를 죄는 데에 혈안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또는 2010년 경 국방성(당시 인민무력부) 소속이던 국방경비총국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으로 이관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⁴⁵ 코로나-19 를 차단하려고 한 극단적인 국경봉쇄 이후에는 탈북은 물론 밀수도 급감한 것으로 관찰됐다.⁴⁶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의 이번 조사에서 국경을 넘는 월경을 시도하다가 북한 국경경비대에 체포된 후 실종된 사람은 9명이었다. 국경경비대는 이들을 국가보위성에 인계했고,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체포와 구금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

진술인들은 탈북 시도로 체포된 경우, 먼저 탈북한 가족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2012년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로 인계된 언니의 상황을 지인을 통해 뇌물을 써서 알아본 한 진술인은 이렇게 말했다.

“[보위원이 언니에게] 너는 여기서 영원히 나가지 못한다고 했대요. 직계가 다 [한국에] 왔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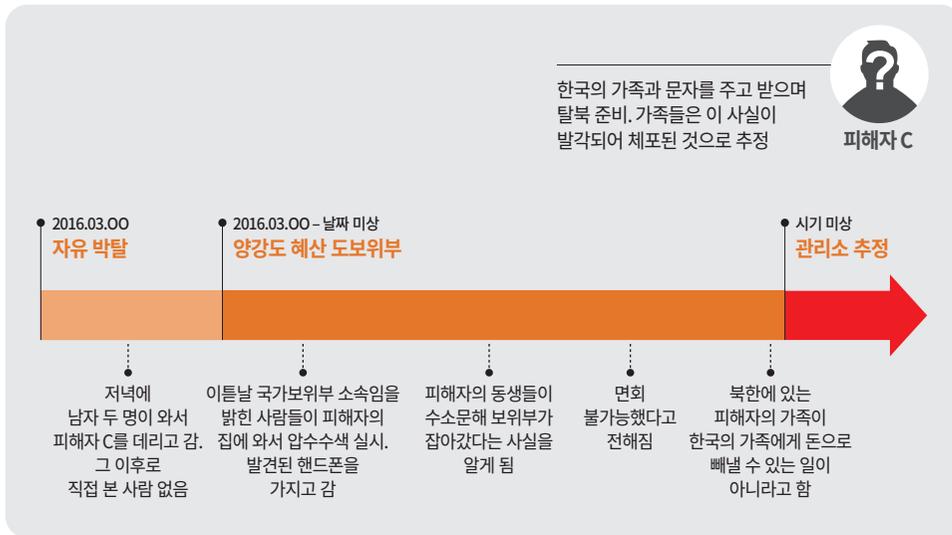
탈북 준비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의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연락하며 탈북을 준비하다가 실종된 사람은 7명이었다. 이 중에는 진술인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를 파악한 경우도 있고, 정황상 진술인이 추정한 경우도 있다.

45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36, 44, 97-98.

46 “‘이제 탈북도 밀수도 불가능하다’ 교활·교묘한 부대 운영책 유착 우려해 주민과 떼어놔,” *아시아프레스*, 2023년 11월 10일, <https://www.tongnastory.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

사례 3 탈북을 준비하던 C씨의 강제실종 과정



국가보위성이 탈북을 준비하는 주민 색출에 공을 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북한에서는 한밤중에 안전원들이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각 가정을 불시 방문해 여행증이 없는 외지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숙박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 2019년 양강도 해산시에서 탈북했고 숙박 검열 방법을 자신의 직무상 잘 알고 있던 한 진술인은 먼저 탈북한 가족이 있는 집들이 검열을 더 자주 받는다고 설명했다. 2016~2019년 약 3년간 국가보위성의 정보원 역할을 했던 한 진술인은 비법 월경이나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해 보고했다고 전환기정의위킹그룹에 밝혔다.

실제로 진술인들은 가족이 먼저 탈북한 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가 심해졌다고 말한다. 2018년 양강도 해산시를 떠나 한국으로 온 한 진술인은 동생 두 명이 2013년 먼저 탈북한 후, 자신과 남아 있던 가족들에게 대한 감시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위지도원이 불러내어 이것 저것 수시로 물었다고 한다.

“북한은 가족 측에서 탈북하면 정치적으로 보잖아요. 저는 자꾸 감시를 받았죠. 저 집은 동생이 갔으니까 분명히 갈거다, 누나도 다 데리고 갈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감시 받는 거예요. 감시 받는 게 뻔히 보이는데 더 이상 못 살겠는 거

예요. 특히면 나오라 해서 한 시간씩 앉혀놓고 이 말 시키고 저 말 시키고. 그래서 이래저러 여기서는 못 산다, 딸들 장래 문제 다 걸렸지, 자꾸 감시 받지.”

〈사례3〉의 진술인은 2016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동생이 탈북을 준비하던 중 보위부에 잡혀갔고 가택수색이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해 있던 진술인은 북한에 있던 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남은 가족의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잡혀간 다음날 보위원들이 집을 샅샅이 뒤져 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 진술인은 보위부가 탈북 준비 정황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기를 가져갔는데 그게 저랑 연결이 있거든요. 전화는 크게 안 하고, 제가 ‘어머니랑 애랑 이렇게 잘 준비를 시켜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탈북 도움

탈북을 중개하거나 돕는 사람들도 강제실종에 취약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5명의 실종자가 파악됐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을 체포해 가혹하게 처벌해왔다.⁴⁷ 한 진술인은 2014년 브로커로 활동하던 친척이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에 잡혀가면서 실종됐다고 말했다. 다른 진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숨어다니다가 결국 2016년에 양강도 혜산시 부위부에 잡혀 실종된 먼 친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개도 돈 받아주고, 사람 보내주고 이런 일 했지. 북한은 이런 사람이면 끝까지 잡아낸다는 거예요. 애를 잡아야 한다 해서 숨어있다가 선거날에 무조건

47 “함북도재판소, 탈북 브로커에 사형선고,” *데일리NK*, 2007년 12월 18일, <https://www.dailynk.com/함북도-재판소-탈북-브로커에-사형선>; 정영, “북 당국, 탈북 브로커에 칼바람,”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월 27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y-01272014160754.html; 김호준, “北, 울들어 60여명 공개처형…김정은식 공포정치 확산,” *연합뉴스*, 2016년 8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1099900014>

올거다 해서 잡아간 거예요.”

또 다른 진술인은 북한으로의 송금과 탈북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브로커를 구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브로커와 연락이 끊어지자 이유를 알아보니 그가 양강도 혜산시에서 당국에 잡혀갔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아예 못 오는 곳으로 갔다”고 말하더라는 전언을 들었다.

가족의 탈북을 도왔다가 체포된 후 실종된 사람들도 있다. 2005년에는 한 가족이 탈북하려다 체포됐는데, 이 가족의 친척도 이들을 브로커와 이어준 혐의로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 잡혀간 후 실종됐다. 2016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브로커 조직을 통해 딸을 탈북시킨 혐의로 한 여성이 체포되어 실종됐다.

연좌제

연좌제로 인한 강제실종자는 탈북과 관련된 실종 다음으로 많은 25명이 있었다.

북한은 특히 정치적 범죄에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해 처벌한다. 온 가족을 한꺼번에 체포해 가기도 하고, 혐의자를 먼저 체포한 후 나머지 가족을 잡아가지도 한다.

연좌제로 강제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끌려간 이후에 알 수 있는 정보가 다른 이유의 실종 사례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대체로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잡혀갔다는 것만 알려지고 그 후의 행방은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진술인들은 실종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곧장 보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그런 소문만 무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징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 남편인지 아내인지에 따라 연좌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아내가 정치범으로 체포되면

남편은 무조건 같이 끌려가는 데 비해, 남편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면 아내에게 이혼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이혼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아내도 남편에게 동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생사를 가르는 이러한 선택권도 남편의 혐의가 무거운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고 연좌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는 최소한 3명의 진술인이 이러한 설명을 했다.

“여자가 요구하면 갈라질 수 있고. 그런데 여자도 개입이 되어있으면 못 갈라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항일투사 가족이라던가, 백두산 줄기라던가 그런 성분이 좋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남편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법적으로 갈라져요.”

2009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탈북한 진술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함께 끌려가기도 하고, 집안의 다른 보호자에게 보내지거나 양육할 사람이 딱히 없을 경우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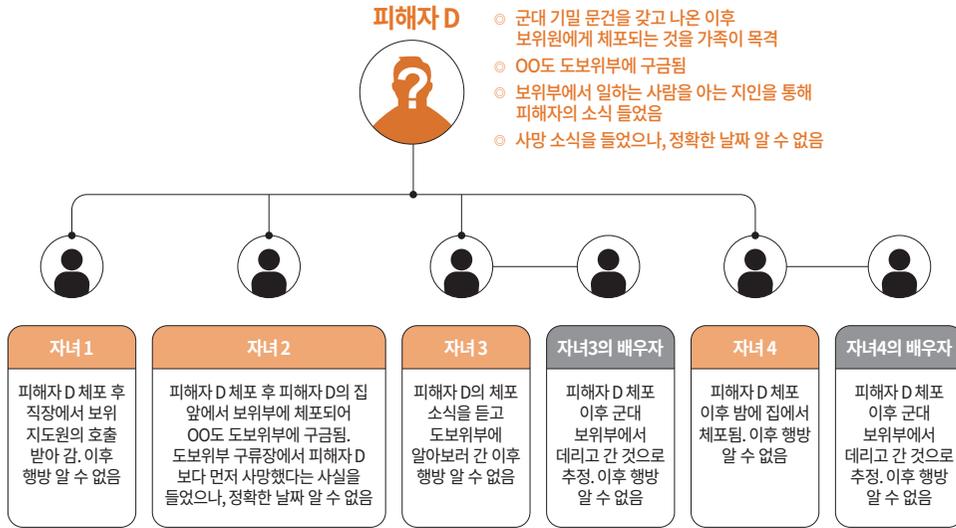
한편, 자녀가 성인이고 아들인 경우에는 연좌제를 피하기 어렵고, 성인인 딸인 경우에는 출가한 다른 집안 사람으로 간주되어 예외가 되기도 한다.

“여자가 정치범일 때는 무조건 남편도 가요. 그런데 남편이 정치범일 때는 경과에 따라 이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들과 딸이 있다 하게 되면 아들까지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요. 남자 종자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결혼한 경우 아들네도 이혼을 시키죠. 그러니까 원 뿌리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종자를 말리겠다 이거예요.”

2012년 황해북도에서 탈북한 진술인

그런데 <사례4>는 성인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체포되어 강제실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4 D씨 일가의 강제실종 가계도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진술인과의 심층면담으로 이 일가의 연쇄적 강제실종이 2011년 후반부터 2012년 초까지 약 4개월 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팀은 실종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건의 맥락을 짚어본 결과, D씨의 자녀 4명은 연좌제가 적용된 것으로 분류했고, 그들의 배우자인 2명은 연좌제로 보기에겐 정보가 부족해 이유 불명확으로 잠정 분류했다.

한국 등 외부세계와의 연락·접촉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세계와 연락하거나 접촉하다가 강제실종된 10명을 기록했다. 통화한 상대방이 한국인이었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거나,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한국 등 외부로 북한 내부자료를 보내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불법 휴대전화 사용으로 여러 번 북한 당국의 조사를 경험한 한 진술인은 단순히 불법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체포되면 한 달 정도 조사받고 풀려난다고 말했다. 자신은 2018

년 양강도 헤산시 시보위부에 체포됐지만, 중국인과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중국돈 2만 위안을 뇌물로 주고 풀려났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있으면 상대방의 정체와 관계, 내용을 밝힐 때까지 조사받고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 같은 헤산시에서 체포된 친구의 경우가 그렇다고 예시했다. 그 친구는 산에 숨겨둔 중국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갔다가 체포됐고, 도보위부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일단 통화기록을 뒤져서 한국하고 전화한 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엄청 세계 때렸거든요. 밝힐 때까지 있어야 돼요. 어디서 알았냐, 누구냐. 무슨 내용이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왔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의뢰로 북한 내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가족을 찾아 연결해주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 실종된 경우도 있다. 한 진술인은 처남이 이런 일을 하다가 2013년 군보위부에 먼저 잡혀간 후 실종됐고, 처남과 함께 일했던 가족도 불려가 누구에게 돈을 전했는지 취조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진술인은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한 것이 간첩 혐의가 되어 2014년 여동생이 체포됐고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에서 청진시의 도보위부로 보내진 후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이 진술인의 남동생도 이 즈음 무산군에서 체포됐는데, 알아본 바로는 한국 정보기관의 돈을 받았다는 간첩 혐의였다고 한다. 남동생 역시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에서 청진시의 도보위부로 보내졌고, 행방을 알아봐달라고 의뢰했던 브로커에 따르면 그 후 함경북도 명간군 제16호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로 들어선 후,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연락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해 ‘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

설하고 비법국경출입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강제 실종 사례들을 보면 실제 처벌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61조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제통신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한편, 북한 자료를 외부로 보내려다가 적발되어 잡혀간 후 실종된 사례가 있었다. 2011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 여성이 한국으로 북한 자료를 넘기려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실종됐다는 진술이 있었다.

김씨 일가나 체제에 대한 비판

이번 조사에서는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이나 조선로동당 또는 체제에 대한 비판 혐의로 강제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8명을 기록했다. 대부분 이러한 발언을 사적인 자리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은 제3자의 신고로 발언 후 수 일 내로 체포된 경우들이었다.

2016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김씨 일가를 비판한 남성이 실종됐는데, 가족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와 가까운 사람이 신고한 것이었다고 한다. 실종자의 가족인 진술인은 그 전에도 그가 “저 김씨 족속들이 문제”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기억했다. 실종자의 아내는 1년 간 남편의 행방을 알아보다가 보위부를 찾아갔는데 한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이 년아, 너도 입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012년 러시아에서 북송된 한 남성도 김씨 일가에 관해 동료에게 했던 말이 문제가 되어 실종됐다고 한다. 실종된 남성은 시베리아 남동부 지역인 치타(Чита) 시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북송됐는데, 그의 동료였던 진술인은 그가 러시아에서 일하던 동안 “김일성이는 김정일이 죽였다” 같은 말을 많이 했던 것이 적발됐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김씨 일가의 우상화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도 강제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함경남도 단천시에서는 누군가가 김정일 모자이크 벽화를 훼손해 수사가 시작됐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자수한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전환기정의위킹 그룹에 설명한 진술인에 따르면, 자수한 남성은 자신의 동네 주민이었고 그 후로는 생사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종교행위

종교행위 혐의로 강제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6명이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권력 절대화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선전을 약화시킬수 있는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체노사이드에 가깝게 절멸해 왔다. 1990년대 이후 국경을 넘나들며 기독교를 접하는 주민이 늘자 북한 당국은 탄압을 배가했다.

2012년 탈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의 한 진술인은 2000년대부터 국경 연선에서 성경이 발각됐다는 소문이 자주 돌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진술인은 2008년 양강도 운흥군에서 딸의 친구 어머니가 김일성 초상화를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매복해있던 보위원들에게 잡혀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술인은 2010년 양강도 보천군에서 성경을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려던 한 남성이 체포된 지 열흘 후 그 어머니도 체포됐고, 모자의 행방을 더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기독교 포교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고,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보위부에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애에 대해 일체 말하지 말고 알려하지 말라. 감옥에 데려가면 밥이 라도 날라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잡아갈 때부터.”

한국·외국 문화의 이용

북한 당국은 외국 문화, 특히 한국 문화를 체제 위협 요소로 간주해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강제실종자 2명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

1995년 함경남도 단천시에서는 한국 라디오를 듣다가 한밤 중 잡혀가 실종된 사례가 있었다. 2008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성인물 영상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기 4대와 USB가 가택수색으로 적발된 후 실종된 남성의 사례가 있었다. 전자의 사례는 실종자의 직장 동료가, 후자의 사례는 실종자의 친구가 진술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이 유행하자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등의 조직을 만들어 한국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강화해왔다.⁴⁸ 2020년대로 들어서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한 것이 명백한 증거로 꼽힌다. 탈북해 한국으로 간 가족이 있는 주민들은 특히 잠재적 외부정보 유포자로 의심받고 감시가 강화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⁹

한국이나 외국 문화의 이용과 관련된 강제실종 사례는 앞으로 더 수집해서 면밀히 분

48 “北 국경 ‘5부 합동 검열그루빠’ 활동중,” *데일리NK*, 2006년 12월 22일, <https://www.dailynk.com/北-국경-5부-합동-검열그루빠-활동중>; 김채환, “北 반사·비사연합지휘부, ‘82연합지휘부’로 변경…상설 조직 전환?,” *데일리NK*, 2021년 11월 5일, <https://www.dailynk.com/北-반사·비사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로-변경/>; 이명철, “북, ‘오징어 게임’ 시청 학생들에 중형 선고,” *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11월 23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quidgame-11232021075345.html; 손혜민, “북, 남한영화 시청하던 10대 청소년들 체포,” *자유아시아방송*, 2019년 7월 19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7192019082308.html; 정태주, “손전화 기록 뒤지고 가족까지 구금…한류 차단 실효성 거들까?,” *데일리NK*, 2021년 12월 20일, <https://www.dailynk.com/20210115>

49 “정보 차단에 주민들은 눈뜬장님… 탈북자 가족이 외부 소식 유입을 주도한다고 간주해 유례없는 철저한 감시,” *아시아프레스*, 2024년 5월 13일,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05/society-human-rights/blocking>

석할 필요가 있다.

기타

기타로 분류한 9명 중 8명은 강제실종에 이르게 된 이유가 복합적으로 보이거나 이유를 짚어볼 수 있는 정보가 적었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1명의 장애인 실종 사례에 주목했다.

한 진술인은 조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조카는 소아마비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양강도 혜산시에서 홀어머니가 키웠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의 안전원이 조카가 스무살이 되기 전부터 이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에게 “그런 곳에 보내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그 말이 생체실험 같은 것을 하는 곳으로 보내라는 뜻으로 짐작했고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이 가족은 평안남도 강서군으로 이주했는데 2008년에 이르러 어머니가 사망하고 조카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처지가 됐다. 끝내 안전원은 그 조카를 데려갔다고 한다. 진술인은 안전원이 조카를 데려갈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애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관계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말라고 손도장을 찍는대요.”

그 후로 진술인은 조카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생체실험에 장애인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더 많은 조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기술했다.⁵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정보는 부족하다. 북한 장애인들의 실태는 강제실종의 위험성 측면에서 더 깊이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50 “2014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para. 328.

북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김정은 일가의 권력은 3대에 걸쳐 세습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도 지속되고 있다. 1945년 창설되어 2025년 80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의 역사에 버금가는 시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한 유엔 회원국에서 강제실종범죄가 매일의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강제실종범죄는 76년 넘게 누적되어 있고 이 시간에도 추가로 벌어지고 있다. 북한 내만 하더라도 철권을 다지려 할 때마다 정치적 숙청과 연좌제로 엮는 대규모 강제실종을 벌였고, 모든 주민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고 복종을 요구할 때에는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인 강제실종이 발생했다. 구조적·제도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법령과 사법절차만으로도 강제실종은 일상화됐다. 북한이 유지해온 정치범수용소들의 수와 규모, 각 수용소의 구축 시점과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의 역사상 누적된 강제실종자 규모가 최소한 수 백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조사처럼 북한 바깥에서 파악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경우는 그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가족들과의 연락이나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행방과 생사에 대한 정보조차 차단된 강제실종자의 상당수가 가족들이 확인할 수 없는 수감시설에서 사망하거나 비공개 처형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 강제실종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문, 가혹행위, 강제노동 등의 반인도범죄는 10년 전 COI 보고서에 잘 기술된 바 있다. 하지만 COI 보고서가 중요한 과제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가해자 책임추궁은 아직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주민들과 탈북민들의 눈물과 좌절감, 그리고 소망을 담고 있다. 강제

실종 피해가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다. 실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실종된 가족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 수많은 실종자들이 어디엔가 살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망자가 됐을지라도 가족들의 기억과 고통 속에 모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 “더 찾지 말라”는 기관원의 짧고 통명스러운 말에서 느꼈던 공포와 좌절감도 이 보고서에 담고자 했다. 우리의 진술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좌절감을 이해하며, 문제국가들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늘고 함께해주길 소망했다.

북한정권의 강제실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계속 매진할 역할은 체계적인 조사기록화와 국제적 보고 활동이다. 책임추궁의 실현까지 나아가기 위한 당분간의 과제 중 하나는 중대하고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특정 범죄마다 직접적 책임이 큰 기관이 어디인지 밝히고,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누구이며, 그들보다 더 상급의 지휘·명령자까지 이르는 연결 증거와 구체적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이 조사에서는 개별 강제실종 사건의 전모를 밝히거나 대부분 하급 가해자들에 관련되고 파편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강제실종이 벌어지는 패턴과 실종 시점의 관할기관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북한의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조사·기록과 국제적 보고 활동을 계속하고, 향후의 책임추궁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혐의자 특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9 791197 632490
ISBN 979-11-76924-9-0



비밀물주포



93300